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전자동 애완동물 살균 목욕기 안전인증대상 여부

애완동물 목욕에서 살균처리까지의 공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기계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동작시작 → 예비 샤워 → 1차 샴핑 → 일시정지 → 2차 행굼 → 일시정지 → 2차 샴핑 → 1차행굼 → 건조 → 살균 → 종료

Answer 샤워 - 행굼 - 건조 - 오존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전자동으로 애완동물을 목욕시키는 목욕기는 전기온수기와 건조 등을 조합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기기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전기온수기(건조기 포함)'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행 안전기준에 오존(O₃)농도를 0.05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제품을 제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기온장고와 전기보온기의 차이점

전기온장고와 전기보온기의 차이가 음식류 등을 보온 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이나 뚜껑이 있으면 전기보온기로 판단한다는 것인지요?

만일 뚜껑 등의 유무로 판단한다면 이동식 국보온 운반차 같은 것은 뚜껑이 있으나 쌍화탕 온장고와 같이 본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덮었다가 떼었다가 하며 사용하는(마치 냄비뚜껑처럼 사용)경우에는 전기 온장고와 전기 보온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기보온기는 음식 또는 용기(그릇 류)를 보온하기 위한 전기용품으로, 보온플레이트(보온쟁반), 보온배식대 등이 있으며, 전기온장고는 밀폐된 공간에 식품 등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용품으로, 쌍화탕온장고, 보온진열장, 보온식 식기 디스펜서 등이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밀폐된 공간에 식품이나 그릇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온장고에 속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보온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터에 의해 국을 보온하는 이동식 국보온 운반차는 전기보온기에 해당되며, 음식물을 냉장 보관 하는 전기보냉고는 전기냉장고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전기냉장고 · 공기청정기 복합기능제품의 안전인증 문의

전기냉장고는 인증을 받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상태로 출하한 후,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요구할 경우, 공기청정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냉장고에는 공기청정기를 부착할 수 있는 배선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기청정기는 냉장고에 들어오는 전원으로 작동됩니다. 공기청정기만 별도로 작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냉장고에 공기청정기를 부착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냉장고 및 공기청정기 겸용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 공기청정기는 기계적, 전기적 집진장치 및 필터를 갖고 있는 구조의 제품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인증 받은 후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당시 인증제품과 구조가 다르므로 불법제품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